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중 소 기 업 제 품 구 매 촉 진 및
판 로 지 원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감염병 확산에 따라 경영상의 부담을 겪는 조달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에서 소액 수의계약 상한액을 한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한액을 이에 맞추어 상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조합 추천 수의계약 상한액의 한시적 상향 근거 마련(안 제8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)

- 1)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계약 법령에서 재난이나 경기침체, 대량실업 등 국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일부 수의계약 한도를 기존의 2배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영에 따른 조합 추천 수의계약 한도도 이에 맞추어 정비할 필요가 있음.
- 2) 종래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소액 수의계약 한도액(5천만원 이하)을 인용하고 있던 조합 추천 수의계약의 상한액을 재난 등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2배(1억원 이하)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함.

- 3) 공공기관 등이 관련 물품과 용역 등을 신속히 구매할 수 있게 되어
감염병 확산에 따른 경영부담을 겪는 공공조달업체의 어려움을 감
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
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6항
2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제1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3항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조합 추천 수의계약) ① (생략)	제8조(조합 추천 수의계약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에 계약이행능력이 있고 구매조건에 맞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공기관은 조합이 추천한 자 중에서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제2항 또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제2항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
1.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6조제1항제5호가목	1.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6항
2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	2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

<u>령」 제25조제1항제5호</u> ③ ~ ⑤ (생략)	<u>령」 제25조제1항제5호 또는</u> <u>같은 조 제3항</u> ③ ~ ⑤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	
연 락 처	(042) 481 - 8919